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1가합5548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관우, 박태범, 최진규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송병주

변론 종결 2023. 4. 4.

판결 선고 2023. 6. 20.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영업보증금) 채권에 관하여 2019. 1. 12. 체결된 양도양수계약 또는 2019. 1. 12. 별지 목록 기재 거래처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21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130,200,000원, 원고 B에게 86,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 A은 E(2019. 4.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 2)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주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F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3) 피고는 주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로부터 영업권을 양도받았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및 가수금 지급

- 1) 망인은 2011. 3.경 D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가 발행한 주식 30%를 이전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갑: FD 대표이사

을: 망인

제1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자산 및 용역

- ① 을은 갑에게 일금 3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다(3억 원 이후로 투여되는 자금은 가수금으로 산입하고 월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한다).
- ② 을은 갑에게 상기 3억 원의 투자금 중 50%를 상환받는 시점에서 추가로 1억 원의 가수금을 갑에게 제공한다(이 시점에 투여하는 가수금 1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 이자를 갑이 을에게 제공치 아니함. 즉, 3억 원의 반을 갑이 상환하였기 때문에 을은 그에 대한 대체로 가수금을 제공한

것이므로).

③ 을은 이 계약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일금 3억 원을 제공해야 한다.

④ 을은 D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으며 현 조직운영의 틀을 유지하는 데만 도움을 준다.

⑤ 을은 이 계약의 발효시부터 D의 직원 신분을 가지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D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이 제공하는 투자금

① 갑은 을이 제공한 투자금 3억 원을 D에 입금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에 매월 500만 원씩 60개월 동안 을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어야 한다.

②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3억 원이 갑이 지정한 방법으로 입금이 완료 즉시에 갑은 을에게 영수증 및 입금표를 발행해주어야 한다(법적구속양식을 구비하는 증빙)

③ 갑은 을이 제공하는 투자금 3억 원을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위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D의 자산 증가 및 외형확충 등 당 회사의 객관적인 가치증대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제4조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자산 및 용역

① D 총 주주지분 30%를 양도한다.

② 을에 대한 월 급여는 550만 원으로 정한다.

제5조 계약기간 및 을의 주주권한 범위

①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해당 계약서에 쌍방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7년간으로 한다.

② 상기한 모든 계약내용의 발효 시점은 갑, 을 쌍방이 당 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③ 을은 7년간의 계약기간 동안은 D의 주주로서 신분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단, 주주로서의 중요 의결사항은 갑에게 위임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D에 3억 원을 투자하고, D 발행 주식 중 30%를 양도받았다.

3) 망인은 2016. 4. 25. D에 가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F는 D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17. 10. 2.부터 2018. 11. 1.까지 아래와 같이 D 소유 차량과

일부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을 4차례에 걸쳐 피고에 매각하였다.

2017. 10. 2.	차량 등	16,000,000
2017. 12. 1.	1차 계약	48,305,329
2018. 1. 31.	2차 계약	47,697,444
2018. 3. 1.	3차 계약	31,487,034
2018. 11. 1.	4차 계약	31,827,239
합계		175,317,046

2) 위와 같은 자산 매각에도 불구하고 D가 거래처에 대하여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자 F는 2019.

1. 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의 영업권 일체를 피고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부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인을 비롯한 주주 전원이 위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여 의결이 이루어졌다.

3) D는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2019. 1.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영업보증금) 채권을 포함하여 '주류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8. 8. 주류도매업 사업을 폐업하였다.

양도양수계약서

갑: D

을: 피고

위 갑, 을은 다음과 같이 주류업 운영과 관련된 '갑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정산의 시점)

- ① 항목의 산정시점 : 2018. 12. 31.을 기준으로 하고 상세내역은 별첨자료와 같음.
- ② 최종 정산시점 : 2019. 4. 30.로 정하고 갑, 을의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③ 최초 산정시점과 최종 정산시점 사이 매출처로부터의 입금액은 정산한다.

제2조(정산대금과 지급방법)

- ① 최종 정산대금과 그 지급방법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 후 확정하며, 계약금 50,000,000원은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수금채무로 상계하기로 한다.
- ② 확정된 정산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갑, 을이 별도 약정서로 합의한다.

라. D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D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0-1~2, 11 내지 13, 14-1~2, 15 내지 17, 20 내지 23호증, 을 제1, 2-1~2, 3-1~11, 4-1~5, 5-1~2, 6, 7-1~4, 8-1~6, 9, 10-1~2, 11-1~2, 12-1~2, 13-1~2, 14-1~2, 15, 16-1~2, 17, 18, 19-1~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 요지

가. 망인은 D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가수금 채권 1억 원, 거래처 보상비 6,000만 원, 미지급 급여 1,300만 원, 퇴직금 4,400만 원 합계 2억 1,7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원고들은 이를 상속받았다.

나. D는 2019. 1. 8. 주주총회를 통하여 D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D 대표이사인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적극재산만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중 별지 목록 기재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영업보증금)에 관한 부분 또는 별지 목록 거래처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 1억 3,020만 원(= 2억 1,700만 원 × 3/5), 원고 B에게 8,680만 원(= 2억 1,700만 원 × 2/5)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06조 제2항),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피고가 그 적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경과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71201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이미 D가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D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전인 2017. 10. 2.부터 2018. 11. 1.까지 경영상태의 악화로 인해 일부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을 피고에 매각해왔고, 2018. 6.경부터는 임원들에게 지급해오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D의 주주이자 임원으로 D의 위와 같은 경영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전 개최된 2019. 1. 8. 임시 주주총회(갑 제4호증 녹취록)에서 F는 "D의 경영의 뭐 지금 잘못으로 인해 이제 부도처리 됨으로 인해 이제 그 일부 자산 채무를 매각해야 되는 수순이 나왔어요. 이제 D으로 저기 운영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녹취록 3쪽), "D에 대해서 정상화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전에 선조치는 임원급여 10% 삭감하고, 또 카드 10% 삭감하고. 다 이렇게 D의 어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했는데 도저히 불가결하다. 그것도 결산해도 안 되고"(녹취록 5쪽), "오늘 안건이 뭐냐하면 D이 도저히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일단 부도 처리 됐어요. 부도 처리 됐는데 D으로는 운영을 못해요. 운영을 못하면 이

자산에 대한 매각 처리에 대해서 뭐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녹취록 9쪽)라고 하면서 D를 주체로 거래처와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는 D의 경영상태를 정상화시키기 어려워 피고에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다) 망인은 D의 주주로서 위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F의 위와 같은 설명에 대하여 "아, 매각을 당연히 해야지"(녹취록 7쪽)라고 하면서 D가 처한 경영상황에서의 영업권 양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최종적으로 D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데에 찬성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저는 매각을 동의합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인 2019. 1. 16. 망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갑 제19호증)나 망인이 작성한 메모(갑 제18호증)에 의하더라도 "D에 넣은 가수금 1억 원은 이사장이 책임진다 함..기한은 아직?", "C으로 간 내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 합의", "우선 1월 말까지 D에서 밀린 급여 해결 방안 공지", "가수금도 차후 해결 안 표명", "가수금은 다소 손실을 감수해야 할 듯"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로 인해 D로부터 망인의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알면서, 이에 대비하여 F와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망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한 후인 2021. 7. 27.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제척기간 도과 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척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준민

판사최지은

판사김다연

별지